

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

온누리상품권 주요 변경 내용



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더욱 집중하여 지원합니다.

1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점포는 가맹이 제한됩니다.

- 직전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신규 가맹 및 유효기간 갱신이 제한됩니다.

※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, 표준세무대표증명 등으로 확인합니다.

※ 법 시행 전(6.17) 가맹된 가맹점은 현재 가맹 유효기간 동안 매출액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
2 가맹 제한업종이 확대됩니다.

- 보건업(병·의원, 치과병원, 한의원 등), 수의업, 법무 관련 서비스업,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이 제한업종에 추가됩니다.

※ 법 시행 전(6.17) 가맹된 가맹점은 현재 가맹 유효기간 동안 가맹취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

3 부정유통에 대한 세부 제재 기준이 마련됩니다.

-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·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담이득금의 최대 3배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가맹점 외 장소에서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됩니다.
- 거래를 통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재사용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.



4 가맹 유효기간 갱신 접수가 시작됩니다.

- 가맹점에 부여된 3년의 가맹 유효기간에 대한 갱신 제도가 최초 시행됩니다.
-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갱신 승인 시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가맹 자격이 유지됩니다.

- 갱신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청은 7월 19일 부터 온누리 가맹점 플랫폼(frc.sbiz.or.kr)에서 가능하며,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방문 또는 우편·팩스·메일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